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7396
----------	-------

제안연월일 : 2026. 3.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7260호)	박정훈의원	2025. 1. 6.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3.5.)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8301호)	이훈기의원	2025. 2.20.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8.2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2097호)	조은희의원	2025. 8.11.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전체회의(2025.11.17.)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14369호)	한정애의원	2025.11.18.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2.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4390호)	조인철의원	2025.11.19.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2.20.)

가.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6.

2. 24.)에서 위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

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나.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 2. 25.)에서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금품 제공을 조건으로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범죄조직에 제공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른바 ‘대포폰’을 개통·유통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이를 예방하기 위해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및 가입제한 서비스 등 보호장치도 존재하나, 이용자가 별도 신청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인지도와 이용률이 저조하여 실효성이 제한되고 있고, 발신번호 변작기를 활용하여 국제전화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허위 표시하도록 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장비의 제조·판매·수입행위를 직접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

려는 것임(안 제32조의6제3항·제8항 및 제84조의2제2항 등).

또한,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으로 인하여 최대주주가 된 자는 공익성 심사 대상이나 인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심도 있게 검토되지 않고 있음.

이에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요 주주대상으로 하여금 보유주식 수 또는 보유 목적 변동 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며, 공익성심사 시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제9항 및 제18조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1호 중 “제10조제6항”을 “제10조제7항”으로 한다.

제10조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익성심사 결과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 공공의 이익의 보호와 관련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자에게 의무 또는 조치를 이행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⑧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기간통신사업자(제32조의10제2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게 된 주주는 보유주식 수나 주식 보유목적의 변동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기간통신사업자는 최대주주 변동을 알게 된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제10조제5항”을 “제10조제6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되려는 자”를 “되려는 자.”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회사의 자본금 감소 또는 다른 주주의 보유주식 처분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가 된 자를 포함한다.

⑪ 제1항제4호 후단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주주가 된 사실을 안 날 이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의6제7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6항) 전단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입제한서비스가 함께 가입되어 기본으로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 체결 전에 가입제한서비스가 함께 가입되어 기본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가입제한서비스의 가입·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입제한서비스에 가입된 이용자는 언제든지 전기통신사업자에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⑨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를 제공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제5항의 전담기관은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를 처리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집한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를 전담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84조의2제2항 본문 중 “제공하여서는”을 “제공하거나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여서는”으로 한다.

제95조의2제5호 중 “제공한”을 “제공하거나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한”으로 한다.

제97조제1호 중 “제10조제5항”을 “제10조제6항”으로 한다.

제104조제5항제1호 중 “신고”를 “신고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통지·보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2제2항 및 제95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대주주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제18조 및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총수를 100분의 5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하게 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 ⑥ (생략)

<신설>

⑦ (생략)

제13조(이행강제금) 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5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8항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 공공의 이익의 보호와
관련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자에게
의무 또는 조치를 이행하게 하
는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⑥ · 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
과 같음)

⑧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기
간통신사업자(제32조의10제2항
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게
된 주주는 보유주식 수나 주식
보유목적의 변동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기간
통신사업자는 최대주주 변동을
알게 된 즉시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현행 제7항과 같음)

제13조(이행강제금) ① -----
-----제10조제6항-----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제외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려는 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5.·6. (생략)

② ~ ⑩ (생략)

<신 설>

⑪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4. -----

-----되려는 자. 이 경우 회사의 자본금 감소 또는 다른 주주의 보유주식 처분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가 된

자를 포함한다.

5.·6. (현행과 같음)

② ~ ⑩ (현행과 같음)

⑪ 제1항제4호 후단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주주가 된 사실을 안 날 이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⑫ (현행 제11항과 같음)

제32조의6(명 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 ① · ② (생 략)

<신 설>

<신 설>

③ (생 략)

④ 제3항의 전담기관은 명 의도
용방지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
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32조의6(명 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 ① · ② (현행과 같
음)

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
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
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 가입제한서
비스가 함께 가입되어 기본으
로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
신역무의 이용계약 체결 전에
가입제한서비스가 함께 가입되
어 기본으로 제공된다는 사실
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
며, 이용자는 가입제한서비스의
가입·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입제한서비
스에 가입된 이용자는 언제든지
전기통신사업자에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
업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조치
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⑥ 제5항-----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법」에 따르고, 사용료 또는 수수료는 면제한다.

<신 설>

⑦ 제6항-----

⑧ 제7항-----

⑨ 명의로용방지서비스, 가입사
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
서비스를 제공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제5
항의 전담기관은 이용자의 고
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

